

무배당 동부 신탁제공 퇴직적립보험

보험약관

무배당 동부 신탁제공 퇴직적립보험 보험약관

제1조 (신탁의 목적)

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29조에 따라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신탁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일환으로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와 퇴직연금 이율보증형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업자’라 함은 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2. ‘보험료’라 함은 신탁업자가 계약자로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 ‘보험금’이라 함은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는 신탁업자로 합니다.

제4조 (신탁업자의 수행업무)

- ① 신탁업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운용지시에 의해 본 건 보험계약을 체결 하거나 변경·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신탁업자는 본 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5조 (보험회사의 수행업무)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보험료의 수령
2.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의 지급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전문 을 통한 전자적 거래시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고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전문을 통한 전자 적 거래시에는 약관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8조 (보험기간)

본 계약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승낙이 이루어진 때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10조 (단위보험)

-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회사가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보험료별로 설정되는 것으로 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시 적용이율의 보증기간 중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설정하며,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이 속하는 달에 회사가 결정한 각 단위 보험별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③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이 속한 달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1조 (적용이율)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는 적용이율을 결정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

- ① 회사는 매월 1일과 16일에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산출합니다. 다만,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적용이율에서 확정급여형의 경우, 기준이율에서 시장상황, 향후 예상수익 및 보험료 속성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지방채 수익률」을 가중 평균하여 보험세목별로 아래와(별표1참조) 같이 산출합니다.
- ④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적용이율의 산출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산출방식 변경시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는 적용이율별 적용기간 이후부터 적용합니다.
- ⑤ 회사는 년2회 이상 적용이율의 변경내역을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함)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 ⑥ 적용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2%를 적용합니다.
- ⑦ 세부적인 적용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지침을 따릅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해지환급금 계산시 해지환급금은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 또는 다른 운용방법으로 변경되는 경우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 금액으로 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만기일±3영업일 이내에 해지하거나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율보증형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3조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율보증형 적용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4조 (해지환급금)

① 해지환급금은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중도해지이율을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율보증기간	보유기간(중도해지시)	중도해지이율
1년형	1년미만	적용이율×90%
	1년이상 ~ 2년미만	적용이율×80%
2년형	1년미만	적용이율×90%
	1년이상 ~ 2년미만	적용이율×70%
	2년이상 ~ 3년미만	적용이율×80%
3년형	1년미만	적용이율×90%
	1년이상 ~ 2년미만	적용이율×70%
	2년이상 ~ 3년미만	적용이율×80%
	3년이상 ~ 4년미만	적용이율×90%
5년형	1년미만	적용이율×50%
	1년이상 ~ 2년미만	적용이율×60%
	2년이상 ~ 3년미만	적용이율×70%
	3년이상 ~ 4년미만	적용이율×80%
	4년이상 ~ 5년미만	적용이율×90%

단, 급여의 지급인 경우 또는 제12조 (계약의 해지 및 이전) 제4항에서 정한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계약의 승계)

계약자는 모든 권리의무를 다른 신탁업자에게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회사는 본 보험계약을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합니다.

제17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8조 (소멸시효)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19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22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3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4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25조 (준거법)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26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제27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다만, 확정급여형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별표1]

이율보증형 이율의 적용방식

[1년 이율보증형]

○ 지표금리(%) = (A1 + A2) / 2

A1 : 국고채(1년만기)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2 : 회사채(1년만기,무보증,AA-)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2년 이율보증형]

○ 지표금리(%) = (A1 + A2) / 2

A1 : 국고채(2년만기)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2 : 회사채(2년만기,무보증,AA-)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3년 이율보증형]

○ 지표금리(%) = (A1 + A2) / 2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2 :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5년 이율보증형]

○ 지표금리(%) = (A1 + A2) / 2

A1 : 국고채(5년만기)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2 : 지방채(5년만기)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가중이동평균이율

$$= \frac{Mi(-3) + Mi(-2) \times 2 + Mi(-1) \times 3}{6}$$

Mi(-3) : 산출시점 직전4월의 16일부터 직전3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국고채평균수익률 및 지방채평균수익률

Mi(-2) : 산출시점 직전3월의 16일부터 직전2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국고채평균수익률 및 지방채평균수익률

Mi(-1) : 산출시점 직전2월의 16일부터 직전1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국고채평균수익률 및 지방채평균수익률

- 주) 1.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2.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3. 지방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지방채권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4. 적용이율은 각월의 직전 2월의 16일부터 각월의 직전1월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국고채평균수익률 및 지방채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